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재란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625
----------	------

발 의 년 월 일: 2026년 04월 06일
발 의 자: 최재란 의원(1명)
찬 성 자: 강동길, 강석주, 김성준,
김원태, 김인제, 박수빈,
박승진, 박철성, 봉양순,
송도호, 왕정순, 유만희,
이민옥, 이영실, 이원형,
임규호, 전병주, 정준호,
한 · 신, 허 · 훈 의원(20
명)

1. 제안이유

- 최근 사회·경제 환경의 변화로 학생들이 단순한 금융지식을 넘어 경제 전반에 대한 이해와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해짐.
- 현행 조례는 금융 분야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교육을 시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기존의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확대하고 교육지원 체계를 공고히 함으로써 학생들이 실질적인 경제·금융 역량을 갖추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해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명을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로 변경하여 금융교육의 범위 확대를 도모함.
- 나. 현행 조례 본문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해당 용어에 대해 일괄 수정함(안 제1조~제9조).

다.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함(안 제 4조).

라.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함(안 제6조제1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경제교육지원법」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를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금융에”를 “경제와 금융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금융교육”이란”을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로, “지식과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를 “올바른 인식 제고와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고”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금융교육 시책”을 “경제·금융교육 시책”으로, “금융교육이”를 “경제·금융교육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교육의”를 “경제·금융교육의”로,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경제·금융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으로, “3년”을 “5년”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

호 중 “금융교육”을 각각 “경제·금융교육”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을 “경제·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시행계획”을 “기본계획”으로, “재원 조달”을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의 제목“(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을“(교육자료 보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경제·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로, “금융교육에”를 “경제·금융교육에”로,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시범학교 지정·운영)”을“(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금융교육의”를 “경제·금융교육의”로,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범학교”를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로 한다.

제7조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9조 중 “금융교육”을 “경제·금융교육”으로 한다.

제1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u> <u>활성화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u>금융교육</u>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u>금융</u>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u>금융교육</u>”이란 금융에 대한 지식과 건전한 금융역량을 향상시키며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p> <p>2. 3. (생략)</p> <p>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u>금융교육</u>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u>금융교육</u>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u>서울특별시교육청</u> <u>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u></p> <p>제1조(목적) ----- <u>경제·금융교육</u> ----- ----- <u>경제와 금융</u>에 ----- ----- -----.</p> <p>제2조(정의) ----- -----.</p> <p>1. “<u>경제·금융교육</u>”이란 「<u>경제교육지원법</u>」 제2조제1호에 따른 <u>경제교육</u>과 --- <u>올바른 인식 제고와 금융생활 태도</u>를 <u>함양</u>하게 하고 -----.</p> <p>2. 3. (현행과 같음)</p> <p>제3조(책무) ① ----- ----- ----- <u>경제·금융교육</u> 시책 ----- ----- <u>경제·금융교육</u>이 ----- -----.</p>

②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 목표 및 방향
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3. 금융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 경제·금융교육-----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 경제·금융교육의 ----- 경제·금융교육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5년-----

② ----- 기본계획-----

1. 경제·금융교육-----
2. 경제·금융교육 -----
3. 경제·금융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4. 기본계획-----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
5. ----- 경제·금융교육 -----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

제5조(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등이 포함된 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시범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시범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시범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원연수 지원)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의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자료 보급) -----

----- 경제·금융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금융사고 및 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 경제·금융교육에 -----
-----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
-----.

제6조(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

----- 경제·금융교육의 ----
----- 경제·금융교육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② ----- 연구학교 및 선도학교 -----.

제7조(교원연수 지원) -----

경제·금융교육-----

-----.

제8조(위탁) ① -----

경제·금융교육-----

-----.

② (생략)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력체계 구축) -----
경제·금융교육 -----

-----.

<삭제>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 조례명과 조례상 교육 범위를 상위법령(「경제교육지원법」)에 부합하도록 '경제'를 추가하여 확대·수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서울시교육청은 이미 금융과 실물경제를 통합한 교육¹⁾을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고 관련 명칭 또한 이에 맞추어 사용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에 따른 실질적인 신규 비용 발생 요인은 극히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비용추계를 하지 아니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선희

추계세제팀장 김중헌

추계분석관 이설화

☎ 02-2180-7953

e-mail : sseol789@seoul.go.kr

1) 서울특별시교육청 경제·금융 관련 업무협약(MOU) 현황 (출처 :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 2025. 12. 31.기준)

협약명	체결기관	주요 체결 내용
초등학생의 슬기로운 경제·금융 생활을 위한 업무협약	금융산업공익재단	초등학교 교육과정 연계 '경제·금융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 초등학교 '경제·금융 교육' 운영을 위한 강사 지원 - 초등학교 '경제·금융 교육' 세부사항에 대한 상호 협력
배움을 통해 풍요를 일구는 금융·경제 교육을 위한 서울특별시교육청-한국세무사회 업무협약	한국세무사회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초·중등 교육과정 연계 '세금·경제교육' 활동을 위한 세무사 강사 지원 초·중등 '세금·경제교육' 운영에 필요한 기타 세부사항 협력 학교세무사 및 자문세무사 위촉 및 지원
금융감독원 업무협약	금융감독원	<모두가 행복한 혁신미래교육을 위한 협약> - 금융감독원과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1사1교 금융교육」 등 학생 대상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진로교육 프로그램 연계 운영에 관한 사항 - 금융교육과 연계한 초·중·고등학생 진로직업체험 등 단위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 금융교육 및 진로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지역사회와 교류·협력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사항 - 금융감독원이 서울학생의 진로직업체험을 교육적, 실질적으로 돕기 위한 진로체험 전담관 1명을 배치하는 사항
경제금융교육 <찾아가는 어린이 금융교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찾아가는 어린이 금융교실 지원